- (나) 호우로 인한 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피난계획을 수립하고,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마니, 마대, 보호천막 등의 수해방지 자재와 양수설비를 확보하고 항 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다) 본사와 현장, 현장과 관계기관과의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 대기반을 편성하고 모 의훈련 등을 실시·운영하여야 한다.
- (라) 현장 및 주변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필요시 집수정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마) 집중호우로 인하여 굴착사면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측구를 설치하거 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우수침투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바) 현장주변 우기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.
- (사) 집중호우로 인하여 암거, 상·하수관로, 터널 등 지하구조물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어 침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(아) 토사 유실, 침수 등으로 인근 주민에 직·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당해지역 재해대책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전 경보 및 대피 장소 물색 등 주민 안 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(2) 절·성토 경사지 및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 재해예방

- (가) 경사면의 무너짐 방지를 위하여 배수로를 확보하고, 비가 오거나 그친 뒤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나) 경사면의 무너짐 또는 토석의 떨어짐에 의하여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또는 근로자 출입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다) 경사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운행 또는 자재 등의 쌓기 등을 금지